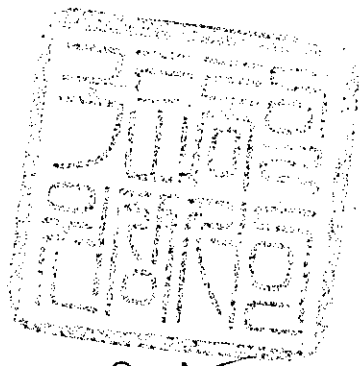


西獨의 統獨政策의 變遷과 西獨의
國內外事情

1975. 7.



Handwritten signature or mark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5. 7.

손 형 중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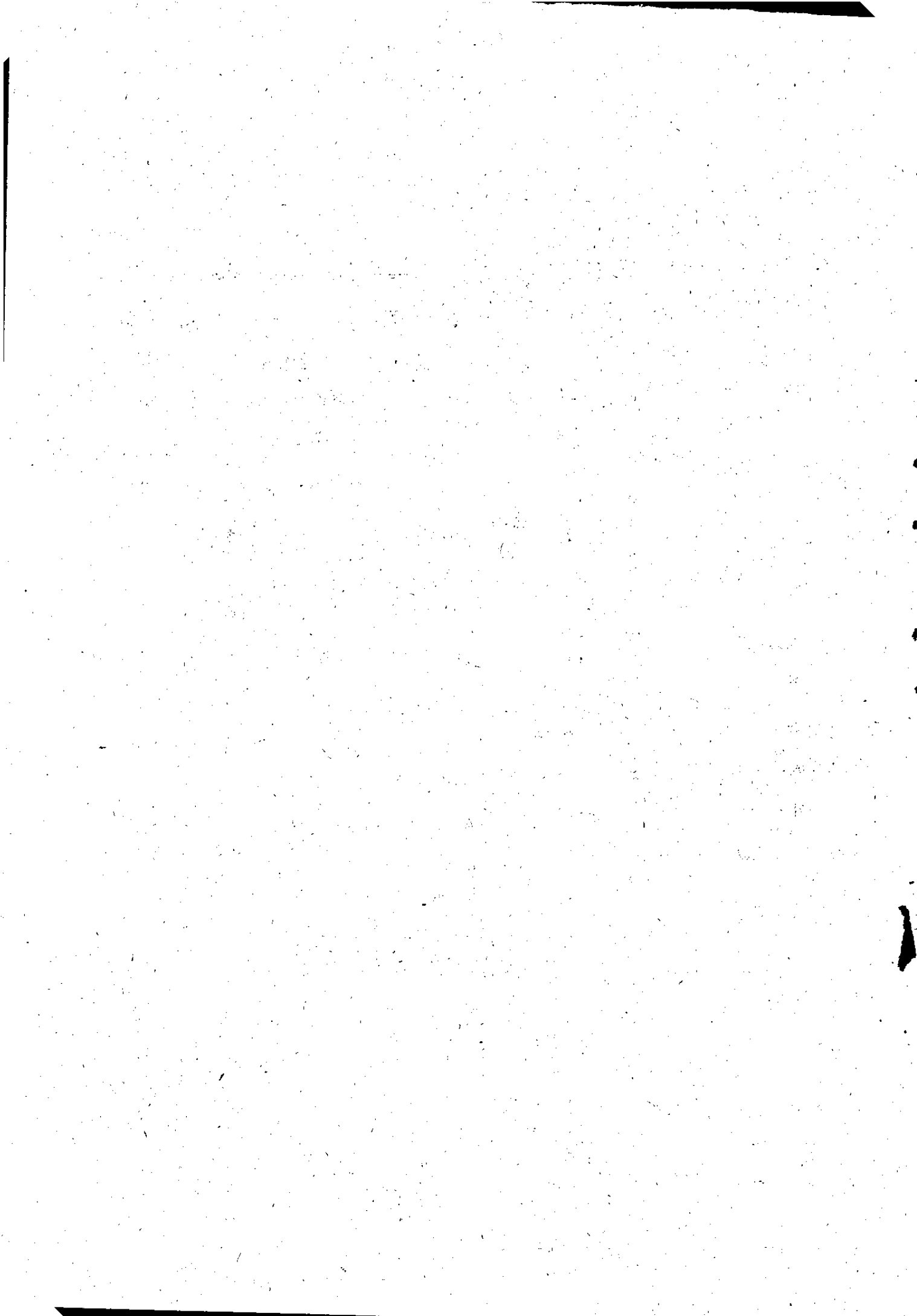
1 . 머리말	1
2 . 「아테나워」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國內外情勢	5
3 . 「애어 할트」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國內外情勢	17
4 . 「키싱거」大聯政의 統一政策과 西獨國內外情勢	23
5 . 西獨의 對東歐政策	29
6 . 獨逸 法統性 및 統一性에 對한 東西獨 立場과 東西獨基本條約	33
7 . 맺는말	39
8 . 附 錄	41



머 리 말

人類史上 未曾有의 戰禍를 입은 獨逸領土 一部에 樹立된 西獨外
交政策의 主要目標은 兩分된 祖國을 어떠한 方法으로 統一할 것인
가 하는 問題였다. 이 目標을 追求하는 手段方法은 設使 西獨國
內外政勢의 諸要因相互間의 衝突結果에 따라 往往 變化되었다 할지
라도 問題自體의 本質에는 變함이 없었다. 理由는 統一問題에 決
定的 影響을 미치는 外的要素가 戰後 四半世紀에 걸쳐 西獨政府의
行動半徑을 넘어선 強大國間의 函數作用에 따라 左右되는 現國際政
治의 本質 그 自體에 基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統一問題를 다루는데에 있어서 內的要素인 西獨內 執權黨
의 手段方法은 時代에 따라 그리고 그때 그때의 國際情勢에 따라
變化되었다. 本報告書는 西獨政黨이 統一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追求하는 手段方法과 西獨國內情勢의 變化過程 및 그에 相應하는
國際潮流의 進路를 相互比較하고 어떠한 國內外情勢에서 어떠한 手
段方法이 動員되었는가를 分析評價하여 類似한 分斷關係에 놓여있는
韓國의 當面課題의 根本性格을 究明하는데에 寄與코자 한다.



2. 「아테나워」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國內外情勢

戰後 西方聯合國 特히 美國과 蘇聯을 中心으로 한 東西兩陣營內에 冷戰이 始作되어 1949 年에 東西獨이 各各 美·蘇의 後援 아래 相異한 政治體制를 갖고 樹立됨으로서 獨逸은 일단 完全히 分斷되었다.

그러나 西獨의 初代首相 「아테나워」는 自國民主體制에 依한 祖國의 統一을 期必코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信念으로 西獨外交政策의 最高目標을 獨逸統一에 두었다.

그의 統一政策의 內容은 戰後 폴란드의 統治地域으로 編入된 오데르·나이제 以東의 東歐地域과 仏蘭西管理로 移讓된 「갈」地方 그리고 東西獨을 合친 1937 年의 舊獨逸領土를 全部 統合한다는 것이었다. 即 復元的 統一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

「아테나워」의 統一戰略은 두개의 原則을 基調로 하고 있었던 바 그 하나는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問題解決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信念的 原則이었으며 또 하나의 原則은 힘의 均衡을 西方側에 有利하게 만들어서 힘에 依한 協商으로 「모스크바」가 부득이 西方側 要求에 同意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힘을 根幹으로 하는 政策的 原則이었다. 1)

具體적으로는 西方自由世界內에서 西獨의 힘을 可能한 限 強化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不可避하게 西獨을 支援하게 만들어 對蘇協商

에서 高地를 占領한 後 蘇聯의 讓步를 얻어서 統一을 이룩한다는 政策이었다.

西獨은 自体防衛를 大戰直後에는 東歐共產圈의 威脅과 그에 対応하는 西方聯合國의 復合的 軍事力에 依存하고 있었다.

冷戰이 激化되면 北大西洋防衛機構가 成立되고 西獨의 同機構加入 問題가 拳論되자 「아테나워」는 同機構에 加入하고 同機構內에서 再武裝을 함으로서 西獨의 힘을 強化하기로 決定하였다. 이 決定은 實로 冷戰体制의 切實한 要求와 「아테나워」의 外交指針이 交叉하게 된 接合點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이와같은 決定을 實現시키기 爲한 構想은 歐羅巴에서는 仏蘭西와 의 關係를 改善하여 過去를 清算할 뿐 아니라 유대를 強化하여 歐羅巴에서 主導權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汎世界的인 次元에서는 大西洋防衛機構內에서 美國의 힘을 背景으로 하여 西獨의 힘을 強化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테나워」의 構想은 的中하였다. 歐羅巴經濟共同体에 加入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西獨經濟는 驚異的인 發展을 거듭하기 始作하였고 北大西洋防衛機構內에서의 強力한 西獨의 位置는 仏蘭西로 하여금 「잘」地方을 西獨에 返還하게 만들었다.

歐羅巴 石炭鐵鋼協會에 西獨參與를 勸誘한 仏蘭西는 元來 「잘」地方의 鐵鋼工業을 共同管理함으로서 「잘」返還後 西獨의 鐵鋼工業 發達을 間接的으로나마 統制하려고 하는 心算이었으나 「아테나워」는 이 機會에 仏蘭西와의 關係를 改善할 뿐 아니라 仏蘭西와 同等

한 會員이 됨으로서 主權回復의 側面에서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2)

그러나 西獨의 모든 政黨이 「아테나워」의 外交路線을 支持한 것은 아니었고 基民党内의 모든 派閥이 「아테나워」의 外交路線을 支持하였든 것은 아니었다. 西獨再武裝問題나 親僞外交政策에 있어서는 基民党内 特別한 反對意見이 抬頭되지 아니하였으나 旧教的 保守勢力에 依한 歐羅巴 統合이 推進되지는 않을까 하는 新教信奉者들은 懷疑의 눈초리로 「아테나워」의 外交進路를 바라보고 있었고 自由主義經濟體制를 信奉하는 財閥系統과 反宗教的 中産層을 基盤으로 하는 自民黨은 英國을 包含한 歐羅巴가 世界舞臺에서 獨自의 路線을 걸어가야 한다고 「아테나워」路線에 反對하고 다녔다. 3)

社民黨은 基民黨과는 相異한 統一方途를 構想하고 있었다. 社民黨의 見解에 따르면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우선 蘇聯과의 理解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蘇聯이 反對하는 限 獨逸統一은 困難하다는 것이다. 그 理由는 蘇聯이 戰勝國으로서 四強協定에 따라 獨逸問題에 對하여 共同決定權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共產主義體制를 採択하고 있어서 西獨體制에 反對할 수 있으므로 이 難關이 우선 克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社民黨의 이와같은 主張의 裏面에는 또 다른 理由가 있었다. 「아테나워」와 「슈트라우스」를 잇는 基民党内旧教保守派는 旧教勢力을 背景으로 歐羅巴統合을 推進하고 있는 印象을 풍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와같은 統合團結은 社民黨의 路線에 正反對되는 것이

었다. 社民党은 以前에 東部獨逸에 가지고 있었던 基盤을 獨逸이 東歐로 分斷됨으로서 잃어버렸던 까닭에 잃어버렸던 基盤을 다시 回復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었을 뿐 아니라 回復하는 것이 急先務였다. 5)

社民党은 歐羅巴石炭 鋼協會에 關해서도 相異한 見解를 가지고 있었다. 社民党的 主張으로서는 同協會는 資本主義體制를 維持強化하기 爲한 旧教的 保守勢力의 結束를 爲한 手段方法에 不過하다는 것이며 西獨의 經濟體系를 仏蘭西에 隸屬시키려는 術策이라고 非難하였는 것이다. 西獨의 歐羅巴石炭鐵鋼協會加入을 이와같이 反對하던 社民党은 西獨經濟가 通協會를 通하여 눈부신 發展을 거듭하게 되자 1954年에 이르러서는 反對主張을 撤回하여 버렸다.

社民党은 또한 「아데나워」의 西獨再武裝政策에도 反對하였는 것이다. 西獨이 再武裝을 하게 되는 境遇 獨逸統一展望은 暗淡하여질 뿐 아니라 國際緊張을 助成하고 蘇聯을 刺戟하게 되며 蘇聯을 刺戟하면 西獨에 有利하지 아니한 結果를 招來하고 나아가서는 獨逸이 敗戰한지 얼마되지도 아니하여 또다시 軍國主義的 路線을 採択하였다는 印象을 줌으로써 새로 태어난 西獨民主主義의 前途를 흐리게 만든다는 것이다. 6)

社民党이 再武裝을 反對한 理由는 이것뿐이 아니다. 萬若에 西獨이 太西洋防衛機構內에서 再武裝을 한다면 西獨이 旧教的保守勢力圈으로 統合됨으로서 歐羅巴는 完全히 分割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7)

社民党的 主張에 따르면 西獨은 二次大戰敗戰結果 戰勝聯合國이

獨逸全體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음으로 主權이 完全히 回復될 때 까지 如何한 防衛體制에도 加担할 必要가 없다는 것이다. 8)

當時 西獨輿論은 敗戰의 쓰라림과 未曾有의 戰禍를 미쳐 잊기도 전에 西獨이 太平洋防衛機構에 加入하는 것을 그다지 歡迎하지 않고 있었지만 大戰直後 極甚한 經濟的 困難과 政治的 混亂을 겪어야 하였던 西獨國民들은 「아데나워」政府가 成功的 外交政策을 遂行하여 西獨村封鎖때와 같이 安保問題에 있어서 훌륭한 手腕을 發射하였고 經濟問題에 있어서도 西方側에 接近함으로써 1952年代 初에 이미 輸出超過를 이룩할 程度로 驚異的인 發展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皮膚로 感知하고 있었으므로 西獨이 設使 西方側 防衛體制에 加担하더라도 繼續하여 成功을 견을 수 있을 것이라는 心理的 連鎖作用에 사로 잡히지 않을 수 없었다. 「아데나워」政府는 西獨國民의 民中에 벌써 政治的 安保와 經濟的 國民의 身分로 昇化되어 있었다. 9)

이러한 客觀的 事實을 度外視한 社民黨은 繼續 對蘇協商을 통한 統一政策만을 앞세웠고 強調하였든 까닭에 統一以外的 다른 問題들은 自然的으로 疎忽히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大戰直後 社民黨의 失策은 여기서 끝난것이 아니다. 時間이 흐름에 따라 冷戰은 激化되고 冷戰이 激化되자 統一이란 거의 實現子可能的 것이라고 斷念한 輿論을 度外視하는데도 있었던 것이다. 社民黨은 政策上 이와같이 國際的으로는 對蘇接近策을 主張함으로써 當時의 國際潮流에 逆行하고 있었고 國內的으로도 一般輿論과 分離되고 孤立되어

있었다.

社民黨의 獨逸統一政策을 支持한 唯一한 壓力團體는 勞組였다. 勞組는 基民黨이 優越한 政治的 地位를 確保하게 된 動機가 무엇보다도 東獨에 있는 可能한 勞組指導者들의 分斷으로 말미암아 西獨政界에 接近할 수 없게 된 現實에 있다고 믿었기에 統一만이 勞組의 唯一한 再生方途라고 確信하게 되었고 이러한 信念에서 社民黨의 統一政策과 對蘇協商論을 支持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立場에 놓여 있었다. 10)

그러면 當時 基民黨에 依한 西獨의 對東獨觀 및 對東歐關係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強大國과의 關係는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잠간 살펴 보기로 한다. 「아데나워」政府는 東獨政權이 自由로운 國民의 意思에 따른 選舉에 依하여 樹立된 政權이 아니므로 不當한 政權으로서 西獨은 이러한 政權을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

따라서 西獨政權만이 正當한 過程을 밟아 樹立된 政權으로서 東獨을 包含한 獨逸全體를 代表하며 東獨을 代表하여 國際적으로 發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 이러한 原則을 創案한 사람은 當時 外務次官이었던 「할슈타인」이었다. 그의 이름을 따라 이 原則을 할슈타인 原則이라고 부른다. 할슈타인原則이란 東獨의 存在를 承認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東獨의 存在를 承認하는 國家와는 西獨이 外交關係를 斷切하여 버린다는 國際法的 報復措置도 內包하고 있었든 것이다.

이 原則에 따라 西獨은 1957年 티토가 東獨을 承認하자 유고

스라비아와의 外交關係를 斷切하여 버렸고 같은 理由로 1963年에
는 큐바와 그리고 1965年에는 애굽과 斷交하여 버렸다. 이와같이
峻嚴한 原則이 할슈타인原則이 比較的 잘 遵守되었든 背景에는 西
獨의 經濟力이 이 原則을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 基民
黨의 對東獨關係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大體的으로 否定的이고 競
争的이었다.

「아테나워」政府는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이 폴란드西部國境線
이라고 主張하던 오더-나이세線에 關係서도 強硬路線을 固守하였다.
오더-나이세線은 포스담宣言에 依하여 獨逸統一이 이룩된 後에 獨
逸과의 講和 條約에서 最終的으로 調整하기로 되어 있었다. 폴란드
는 西獨이 後日에 이러한 포스담宣言을 利用하여 오더-나이세以東
의 舊獨逸領土의 返還을 強要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테나워」政府는 폴란드의 거듭된 要求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오더-나이세線을 前述한 포스담宣言을 根拠로 認定하지 아
니하였든 것이다. 西方側聯合國도 西獨側의 이러한 主張을 正當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와같은 對共產圈強硬路線은 西方側의 獨逸統一方案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테나워」政府는 統治의 合法性이 國民主權에서 由
來되는 것이므로 統一은 東獨에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喝破하였고 西方側聯合國들은 西獨의 立場을 後援하였다.
그러나 蘇聯側共產圈에서는 獨逸統一은 獨逸中立化를 通하여 成就되
어야 한다고 主張하여 基民黨의 自由選舉에 依한 統一方案에 對立

하였다.

共産黨은 1946年 10月 20日 伯林選舉에서 26席이란 極少數의 議席을 차지하였을 뿐이었다. 130席을 헤아리는 伯林州議會選舉에서 26席이란 絶望的 慘敗였다. 13) 國民의 呼應을 받지 못한 共産黨이 自由選舉를 贊成할理 萬無하였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萬若 自由選舉에 依한 獨逸統一이 이루어져서 獨逸이 自由陣營에 統合된다면 蘇聯의 東歐影響圈은 적지 아니한 威脅을 받게 되었을 것이므로 蘇聯의 中立化獨逸統一方案은 蘇聯立場에서 보면 나을법도 한 것이었다.

蘇聯의 1950年代 獨逸中立化案에는 또 한가지 理由가 있었다.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아테나워」는 1952年 3월에 太平洋防衛機構內에서 西獨을 再武裝한다는 方針을 굳이고 있었으므로 蘇聯은 萬若 西獨이 再武裝하는 境遇 또 다시 獨逸의 軍事的 威脅에 直面하게 되며 蘇聯安保는 難境을 免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14) 따라서 蘇聯政府는 外交覺書를 發送하여 西獨의 再武裝을 沮止하고 西獨의 太平洋防衛機構加入을 妨害하여 自信의 安全을 企圖하고 獨逸中立化方案을 1954年 正式으로 提案하였는 것이다. 15)

그러나 美國과 西獨이 이와같은 蘇聯의 底意를 모름理 없었다. 共産勢力封鎖를 第一義的인 美國國利로 看做 하는 當時의 美國은 西獨을 共産勢力의 膨張을 沮止하기 爲한 保壘로 利用코자 하였으므로 獨逸中立化方案은 當然히 拒否되어야 할 處地에 있었고 美國의 對共安全策이 었든 大西洋防衛機構도 相當한 進歩를 이룩하고 있었든

더이므로 蘇聯의 提案은 再考의 價值가 없었다. 其他 歐羅巴諸國
들은 統一된 獨逸은 威脅的 存在로 看做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均衡에 變化를 招來한다는 見地에서 蘇聯의 獨逸中立化方案을 積極
的으로 支援하지 아니하였은 것이다. 16)

1953年 蘇聯에서 스탈린이 死亡하고 原子彈을 發明하게 되자
歐羅巴의 政治 氣流는 急變하기 始作하였다. 美國은 '틀백' 政策
을 採択하게 되었고 西獨은 大西洋防衛機構加入을 서둘지 아니할
수 없었다.

西獨이 同機構에 一切 加入하게 되자 蘇聯은 自身の 獨立中立化
統一方案이 實現不可能하게 된것을 認知하여 이 方案을 抱棄하고
두개의 獨逸이 存在한다는 現實論으로 對獨逸政策을 轉向시키게 되
었다. 1955年에는 西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기로 合意하였고
1956年에는 初代駐西獨蘇聯大使가 本에 着任하였다. 1955年
交合意後 아테나워가 모스크바를 訪問하였을 때 후루시초프는 蘇聯
이 上더 西獨을 北大西洋防衛機構로부터 離間시킬 意思를 갖고
있지 않다고 確言하였다. 17) 蘇聯의 獨逸二國家並存에 依한 現狀
固着政策은 이러한 過程을 밟아서 露端되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西獨은 如前히 東獨의 存在를 否認하였다.
當時 蘇聯은 戰勝國으로서 獨逸問題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었으며
로 獨逸統一問題를 解決하기 爲해서는 不可避한 存在였다. 따라서
統一問題를 追求하기 爲해서는 蘇聯과 通話를 繼續할 必要가 있었
기 때문에 아테나워政府는 不得已 蘇聯과 外交關係를 開設하였다.

西獨이 東獨의 存在를 否認하자 蘇聯은 自身의 獨逸二國家亦權에 依한 現狀固着政策이 失敗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不安은 蘇聯으로 하여금 如何한 手段을 使用하여서도 西獨이 東獨을 承認하도록 強要하여야만 되었던 것이다.

우선 蘇聯은 西伯林의 地位가 政治적으로나 法的으로 不安한 狀態에 놓여 있었다는 點에 着眼하였다. 그리하여 西伯林에 關하여 西獨으로 하여금 東獨과 直接 交渉하도록 措置를 取한다면 西獨이 東獨을 承認하는 結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1958年 11月 蘇聯은 西伯林을 非軍事的 自由市로 만들라고 提案하였다. 西方側의 反應은 各各 相異하였다. 美國과 英國은 西伯林駐屯軍을 減少하는 線에서 蘇聯과의 打協點을 摸索하자는 意見을 彼歷하였고 西獨과 仏蘭西는 蘇聯의 提案을 強硬히 拒否하여 버렸다. 18) 西伯林은 1948年의 封鎖에 이어 다시 한번 難境에 빠지게 되었다. 避難民의 數는 날로 增加하였다. 蘇聯과 東獨은 西方側 意見이 一致하지 아니하고 當事國인 西獨이 願強히 拒否하자 西伯林自由化方案에 依한 東獨承認策이 實現不可能한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共產策動에 依한 不安으로 避難民의 數만 增加하였고 西伯林은 避難民의 脱出口役割만 하고 있었다. 事態가 이렇게 되자 1961年 蘇聯과 東獨은 모스크바에 東歐共產諸國頂上會談을 召集하여 西伯林을 통한 避難民의 脱出退路를 遮斷하는 決定을 내렸다. 19)

以上에서 본바와 같이 獨逸問題에 關한 蘇聯의 態度는 當初에는

西獨이 西方側에 統合되는 것을 妨害하는 戰術로 一貫되어 있었고 其後로는 獨逸을 分斷함으로서 東西獨으로 하여금 並存케 하여 現狀을 固着시키자는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圈의 安保政策의 一環으로 取扱되었다. 蘇聯의 獨逸中立化方案도 西獨의 大西洋防衛機構加入을 妨害하는 戰術에 不遇하였다.

一般的으로 1950年代 基民党的 外交戰略은 時代에 알맞는 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反하여 社民党的 對蘇協商을 통한 統一政策을 現實情勢를 度外視하고 蘇聯의 意圖를 逆行하는 攻略으로 對蘇協商을 固執하였다는 點에서 하나의 愚를 犯하였다고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50年 後半부터 國際情勢는 또다시 흔들리기 始作하였고 차츰 多極化現狀이 抬頭되기 始作하였다. 可恐한 核武器의 破壞力은 美·蘇로 하여금 核實驗禁止措置와 軍備縮少를 비롯한 새로운 問題들을 討議하기 爲하여 서로 接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美·蘇의 接近이란 美國으로 하여금 特히 獨逸統一問題에 있어서 對西獨支援政策을 消極적으로 取扱하도록 強要한 要因이었다. 20)

西獨과 日本은 其間 經濟大國으로 登場하기 始作하였다. 드골은 對蘇接近을 通해서 歐羅巴의 hegemon을 掌握하려고 東奔西走하기 始作하였다. 結局 美國과 仏蘭西가 獨逸統一問題에 있어서 統一支援策路線을 離脫하여 버렸다. 1959年 드골은 오더-나이세線을 폴란드의 西部國境線으로 認定한다고 正式으로 發表하기에 이르렀

다. 21) 東歐圈에서도 多極化現 狀은 일어나기 始作하였다. 特히 西独과 接近線을 비롯한 特別한 問題를 갖고 있지 않는 支援諸國 들은 西独의 經濟力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狀況 에서 「아테나워」政策은 基盤을 잃기 始作하였다.

3. 애어할트 時代의 統一政策과 西獨 國內外政勢

1963年 애어할트가 首相職에 推戴된 理由는 무엇보다도 그의 經濟的 成功에서 由來된 後光의 結果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애어할트는 外交通은 아니었다. 外相슈뢰더는 아테나워 밑에서 1962년부터 1963년까지 外相職에 있었던 基民黨出身이었다. 애어할트와 슈뢰더는 基民黨內 新教進歩派에 屬하고 있는 人物이었다.

애어할트와 슈뢰더는 새로운 國際情勢에 適應하기 위하여 親美 路線은 견지하며 自体安保問題를 解決하고 東歐圈과는 外交關係를 갖지않되 經濟分野를 通해서 接近하여 東獨을 孤立시킨다는 새로운 政策을 樹立하였다. ²²⁾ 이들은 새로운 外交路線에도 不拘하고 根本的으로는 아직도 모스크바의 와싱턴이 獨逸統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아테나워」的 信念에 執着되어 있었으며 「아테나워」外交政策의 範圍는 完全히 脫皮하지 못하고 있었다.

애어할트는 슈뢰더는 그들이 執權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基督教는 自黨內에서조차 基盤을 닦지 못하고 있었다. 基民黨內部에는 黨首아테나워를 비롯한 下院議長 겔스텐마이며 外交專門家 폰·구텐 벨그와 슈트라우스 등에 依한 旧教保守派가 가톨릭勢力의 基盤위에 確固한 政略的 位置를 굳히고 있었다. 이러한 旧教保守派는 아테나워가 退任하였는데도 不拘하고 基民黨內에서는 애어할트가

外交에 未熟한 點을 利用하여 아직도 방대한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었다. 이들은 對仏接近을 通해서 獨逸問題의 解決策을 찾고자 생각 하고 있었다. 旧敎保守派는 美國이 獨逸問題에 있어서 西獨을 支援하지 않을뿐 아니라 蘇聯과 野合하여 西獨을 背反하고 있다고 非難하였으며 西獨의 立場에서 보면 歐羅巴의 座標를 부각시키려는 드골構想이 더 有利하다는 理由로 親仏路線을 主張하였다. 經濟的 側面에서나 軍事的 側面에서도 西獨은 歐羅巴諸國과의 關係를 強化함으로써 生存權問題를 自體的으로 解決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基民党内 旧敎保守派는 애어 할트政府의 對東歐接近 等에 對하여 西獨이 東歐共產圈과 關係를 強化하면 蘇聯의 國際的 地位가 強化되어 西獨의 對東獨立場이 強化된다는 從前의 見解를 固守하여 新政府의 對東歐接近策을 強力히 反對하였다.

그러나 애어 할트 政府는 對美接近을 通해서 北大西洋防衛機構內에서 核武器를 保有함으로써 蘇聯이 西獨을 겨누어 配置한 中距離頭武器에 対応하고자 全力을 다 하기로 決定하였다. 美國은 北大西洋防衛機構에 多邊核運을 創設하여 美國이 Veto權을 갖는다는 條件下에 포라리스-로켓트를 供給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同方針에 따르면 英國이 포라리스潛水艦을 提供하여 歐洲 多邊核軍의 中樞를 構成한다는 것이다. 仏蘭西는 同方針이 仏蘭西의 安保를 保障할 수 없다는 理由로 拒否하여 버렸고 協助하여 歐羅巴 獨自的인 核軍創設을 企圖하였다. 드골案은 西獨에 依하여 拒否되었다.

에어 할트政府는 對美交渉을 통한 自体核武器를 保有하기 爲하여 1961年부터 1964年까지 25億弗 相當의 武器를 購入하였으며 聯合軍駐屯經費負擔으로 10億弗以上の 財政赤字를 惹起시키기에 이르렀다. 美國防長官 맥나마라는 貿易差를 解消하기 爲하여 西獨이 더 많은 武器를 購入하여야 된다고 계속 固執하여 양보하지 아니하였고 交渉은 정 체되었다. 其外에도 當時 美國은 核 擴散禁止問題로 蘇聯과 協助하고 있었으므로 美國 Veto權을 固執하였던 結果로 에어 할트政府 計劃은 實用性이 없게 되어 水泡로 돌아가고 말았다. 23)

事態가 이렇게 發展하자 1966년에 이르러서는 當時까지의 발사 條約機構의 提案들을 綜合하여 東西歐洲中間地帶에 非核地帶를 設置하고 相互間에 不可侵條約을 締結하자고 하는 對東歐平和攻勢를 取하였고 對東獨關係에 있어서는 東獨을 正式으로 承認하지 않으나 安保問題와 軍備縮少問題에 對하여 制約없이 相互討議할 用意가 있다고 천명하여 一步後退하였다. 24)

에어 할트政府提案에 對한 東獨과 東歐共產諸國의 態度는 硬化되었다. 東獨을 正式으로 承認하고 오더 - 나이세線도 正式으로 承認하기 以前에는 如何한 協商에도 応할 수 없다고 하여 西獨의 提案을 一蹴하여 버렸다.

에어 할트政府의 對東歐關係에서는 若干의 進展이 있었다. 에어 할트政府의 對東歐共產諸國에 對한 政策은 東歐共產圈에 多極化現象이 일어나자 外交關係는 樹立하지 않되 西獨의 經濟力을 基盤으로 하여

通商關係를 樹立하고 通商關係를 強化함으로써 東獨을 孤立시킨다는 政策이었다. 25)

그렇게 되면 統一問題에 있어서 東獨의 位置가 弱화되고 西獨의 位置가 向上된다는 것이다. 一種의 아메나워思考方式이다. 이러한 政策에 따라 對東歐接近通路를 開設하기 爲하여 발샤바, 부다페스트, 소피아와 부카레스트에 各各 通商代表部를 設立하였다. 그러나 對東歐共產諸國과의 關係도 前記한 바와 같이 以上 더 發展할 수 없었다. 이러한 難境의 裏面에는 蘇聯内部情勢와의 變化가 되어 브레즈네프의 強硬派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면 애어할트政府의 對蘇關係는 어떠하였는가? 애어할트가 하든 當時 蘇聯에는 후르시초프가 執權하고 있었다. 후르시초프는 核武器의 可恐한 破壞力에 자극되어 絶對的 平和共存政策을 追求하였다. 후르시초프는 한편으로는 古巴危機를 고비로 對美接近을 試圖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對西獨接觸을 企圖하고 있었다. 1964년에는 아드슈베이가 西獨의 對東歐共產圈政策에 對한 眞實은 打開하기 爲하여 본을 訪問하였다. 뒤이어 후르시초프自身도 西獨을 訪問하여 對西獨協商을 推進하기로 決心하고 있었다. 26) 이러한 후르시초프의 計劃에 對하여 強硬派 브레즈네프와 수수로프는 후르시초프가 對西獨關係를 改善하기 爲하여 東獨을 犧牲시키고 있다고 하여 후르시초프路線에 對立하여 鬪爭하였으며 結局 1964年 후르시초프를 失脚시킨後 1966年 7月에는 울부리히트 및 코몰카와 協議하여 부카레스트에 東歐共產圈會議를 召集하여 커뮤니케를 發表하고 西獨을 包含한 西方側이 東獨과 오더-나이세線을

承認하여야 한다는 蘇聯本然의 對西獨政策으로 還元하여 버렸다.

1966年 애어할트政府의 外交政策은 失敗의 絶頂에 이르렀다. 國內적으로는 基民黨旧敎保守派에 손이 묶여 있었고 社民黨과 自民黨은 애어할트政府의 對東歐政策이 消極的이라고 하여 계속 非難하고 있었다. 國際적으로는 對美政策이 失敗로 끝났고 仏蘭西를 度外視하여 獨仏關係는 惡化되었고 美國은 對蘇接近의 必要性和 越南問題 및 國內經濟問題로 西獨에서 對問되어 있었다. 27)



4. 키싱거大聯政의 統一政策과 西獨國內政勢

1966年 에어할트政府가 물러나고 키싱거를 首班으로 한 大聯政이 構成되었다. 首相 키싱거는 基民党内 旧教保守派와 新教進歩派 사이에 이루어졌던 妥協의 産物이었다. 키싱거는 西獨下院에서 外交通으로 活躍하다가 其後 바덴-빌템벨그州政府의 首班을 歷住하였는 關係로 其間 外交紛争에서 比較的 超然할 수 있었으며 基民党内의 어느 特定派閥에 屬하지 아니하였는 關係로 쉽사리 首相에 推戴될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키싱거를 支持함으로써 1962年의 슈피겔事件의 悲劇으로부터 再起할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社民黨은 政策路線이 다르고 失政을 거듭한 基民黨과의 聯政을 反對하였으나 부란트가 副首相과 外相職을 맡는다는 條件으로 聯政에 參與하기로 決定하였다. 現首相 슈미트는 當時 軍事專門家였기 때문에 國防職責을 希望하고 있었으나 부란트가 外相職責을 맡게 되었으므로 前外相 슈뢰더에게 國防職責을 양보하였고 슈트라우스는 財相職을 차지하였다. 키싱거內閣은 大體的으로 보아 基民党内旧教保守派 新教進歩派를 비롯한 中立主義者 하이네만 民權主義者 폰·하셀知識層을 代表하는 카로 슈밀트, 財閥의 支持를 받는 슈북거等 雜多한 勢力의 複合体였다. 이러한 複合体에서 키싱거는 首相으로서 政策一般에 對한 最終決定權을 갖고 있었으며 부란트는 外相으로서 外交政策을 左右할 수 있는 操縱간을 잡고

있었다. 強力한 外交政策이란 始初부터 期待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8)

키싱거大聯政의 急先務는 當時 緩和되어가는 國際情勢에 適應하기 위하여 突利的이고 積極的인 外交路線을 確立하고 애어할트政府에 依하여 墜落된 西獨의 地位를 다시 向上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爲하여 우선 軍事安保問題와 統一政策問題를 結附시키지 않고 別途로 推進시키는 方案을 採択하였다.

對東歐政策도 積極的 姿勢로 臨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에는 单独代表權을 臨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리하여 1967年에는 单独代表權을 폐지할 수는 없으나 東獨을 事實上 存在하는 政權으로 受諾할 用意가 있다고 宣言하였고 東獨과 東西獨間의 旅行問題를 비롯하여 經濟 社會 文化等 諸分野에 있어서 關係를 促進시키기 爲하여 討議하자고 提案하였다. 23) 이 提案은 東獨을 孤立시키겠다고 하든 애어할트政府의 外交政策에서 一步 前進한 것이었다. 할슈타인原則에 對해서도 이 原則을 東歐共產諸國에는 適用하지 않기로 하였다. 一種의 後退였다. 애어할트의 對東歐接近政策이 東獨을 孤立시키기 위한 對東歐通商政策이었다면 키싱거大聯政의 對東歐接近政策은 屬地主義的 性格을 띤 할슈타인原則의 縮少版이었다.

할슈타인原則의 縮少版은 西獨이 東歐共產諸國을 承認할때 第三國이 大量으로 東獨을 承認하게 되어 西獨이 占領하고 있던 高地를 빼앗기게 됨으로 이러한 境遇에 對備하기 爲한 予備策으로 考案된

措置였다.

1966년에는 우선 문헨條約의 無効를 宣言하였다. 1967年 正月에는 루마니아와 正式의 外交關係를 樹立하였고 유고슬라비아와는 1968년에 正式 外交關係를 再樹立하였다. 對東歐政策이 活氣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趨勢를 바라보고 있던 감보더아가 東獨을 承認하였다. 할슈타인縮少版이 適用되어야 할 境遇가 生긴 것이다. 그러나 西獨國內情勢는 如意치 아니하였다. 外相 부란트가 反對하였다. 할슈타인 原則이 繼續 適用되는 西獨은 國際的 孤立을 免치 못할 것이라고 警告하고 이것은 이미 時効가 지난 歷史的 遺物에 不過 함으로 當然히 破기되어야 한다는 見解를 彼歷하였다. 이에 反하여 基民黨 旧教保守派는 버마 라오스 等 印支諸國이 이와같은 先例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反對하였다. 妥協點이 나왔다. 結局 西獨大使만을 召換하여 外交關係를 格下한다는 線에서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키싱거大聯政이 執權始初부터 이렇게 積極的 姿勢로 對東歐政策을 推進하자 東獨은 이와같은 趨勢를 逆利用하여 逆할슈타인 原則을 創出하였다.

西獨이 東獨을 承認하고 現在 國境線을 認定하며 核武器를 포기하기 以前에는 모든 社會主義國家는, 西獨과 外交關係를 締結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蘇聯과 協力하여 이 案을 1967年 2月 10日 발사바條約機構外相會議에 附議하였다. 24)

比較的 中立路線을 攄하고 西獨과 이미 外交關係를 樹立한 루마니아가 強力히 反對하였든 關係로 逆할슈타인 原則은 빛을 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獨은 이 方案을 貫徹하기 爲하여 逆할슈타인 原則을 繼續 固執하였다. 其後 부카레스트에서 발샤바 條約機構會議가 召集되었을 때 東獨은 同會議를 利用하여 모든 社會主義國家는 西獨과 外交關係를 締結할때는 上記 東獨의 逆할슈타인 原則을 貫徹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는 事項을 共同코뮤니케에 挿入시키는데에 成功하였다. 그러나 이 事項은 一種의 義務條項으로 採択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東獨의 努力은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東獨은 칼스바트會議에서 같은 要求事項을 再強調한 나머지 社會主義國家가 西獨과 外交關係를 樹立할 때는 西獨이 現存國境線을 認定하여야 하며 核武器를 抱棄하여야 한다는 것을 條件으로 提議하기로 合意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单独代表數만은 西獨 스스로가 抱棄하도록 勸告한다는 線에서 落着되었다.

키싱거大聯政은 對蘇關係도 改善하려고 努力하였다. 蘇聯은 애어 할트政府가 核武器保存計劃을 推進하고 있을 때 이것을 커다란 威脅으로 看做하고 있었다. 키싱거大聯政은 이 問題에 對하여 蘇聯과 討議하자고 提議하였다. 會談은 1967年末에 始作되었다. 會談이 始作되자 蘇聯의 態度는 硬化되었다. 西獨이 東獨을 承認하는 問題 그리고 西獨이 오더-나이세線을 承認하는 問題까지도 一括討議하자는 強硬姿勢로 變하여 버렸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蘇聯이 二次大戰戰勝¹⁾으로 西獨內에서 軍國主義와 나치主義가 復活하지

않도록 監視할 權利가 있다 하여 이 問題도 같이 討議되어야 한다고 버티었다. 25) 키싱거大聯政의 對蘇外交는 一切 주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키싱거大聯政의 對蘇外交는 1968年 도하나의 一大轉期를 마지하게 되었다. 同年 8月 蘇聯은 체코를 侵功한 것이다. 武力行使를 무릅쓰고 現狀을 固着시켜야 한다는 執念에서 나온 것이다. 蘇聯安保體制에 威脅이 되기 때문이다. 自体安保를 爲하여 緊要한 東獨과 포란드 및 체코의 움직임에 언제나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蘇聯의 立場이었다. 키싱거大聯政은 蘇聯의 체코侵攻을 通하여 東歐圈問題에 對한 關鍵을 아직도 蘇聯이 쥐고 있다는 事實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외도 西獨이 核武裝을 하게 될 境遇 蘇聯과 아무런 妥洽도 할 수 없다는 事實도 알게 되었다. 東歐圈問題는 蘇聯과의 양해가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見解에 따라 東歐—蘇聯—東獨이란 縱前의 西獨 政策도 蘇聯—東歐—東獨이란 政策으로 轉換되어 蘇聯과 一括妥決된다는 方向을 잡게 되었다. 26)

1969年에는 蘇聯의 外交政策도 또한 一大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中蘇紛爭이 兩國國境地方에서 激化되었다. 蘇聯의 對西歐關係를 早速히 調整하여 對中共姿勢를 再整備하지 않으면 안된 必要性이 생긴 것이다. 27)



5. 西獨의 對東歐政策

西獨의 對東歐政策은 1966年 애어할트政府에 依해서 始作되었다. 애어할트政府는 當時 東獨을 除外한 東歐共產諸國에 平和黨書를 發民하여 紛争解決策으로서의 武力을 抱棄하자고 提議하였다. 이렇게 發端된 西獨의 東歐政策은 키싱거大聯政에 依해서 繼續 強化되었고 부란트의 社民黨 政府에 依해서 完結되었다. 애어할트政府나 키싱거大聯政의 東歐政策은 이미 既述하였으니, 다음은 부란트社民黨 政府의 東歐政策을 簡單히 살펴보기로 한다.

부란트의 社民黨은 1959年 2月 칼로·슈만트를 團長으로 한 對蘇使節範圍를 모스크바에 派遣하여 社民黨의 獨逸中立化에 對하여 蘇聯의 意圖를 打診한 結果, 蘇聯은 安保政策的 考慮에서 獨逸 統一을 全적으로 反對하고 있을 뿐 아니라 當時의 歐羅版圖를 關係 當事國間에 條約을 締結하여 現狀固着시키고자 企圖하고 있는 事實을 確認하였고 其後 一連의 對東歐共產諸國과의 接觸과 蘇聯의 對東歐政策을 통해서 現狀固着이 이루어지지 않고 武力을 抱棄하지 않는 限 西獨의 對東歐政策은 成功하기 어렵다는 結論을 얻었고 獨逸統一이 가까운 將來에 完遂될 展望이 없다고 判斷하였다. 또한 當場에 解決될 수 없는 이러한 問題로 人間의 尊嚴성과 實質的 內面生活이 犧牲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見解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獨逸의 統一과 獨逸民族의 自決權을 抱棄하여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獨逸民族의 自決權을 繼續保有하고 自決權에 依한 獨

逸統一을 追求하면서도 人間의 內面生活의 忠實을 期하자는 現實的 考案이 부란트의 對東歐平和共存政策인 것이며 이러한 現實的 要請을 充足시키기 爲하여 이데오로기에 依한 對立은 克服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信念이었다. 28) 이러한 構想을 綜合定立하여 1968年 10月 西獨議會에서 1) 歐羅巴平和保存 2) 獨逸民族의 自決權과 統一性의 確保 3) 獨逸民族相互間의 分斷關係를 克服한 並存關係를 넘어서 相互協力關係까지의 發展的 接觸 4) 東西獨間의 非外國의 特殊關係樹立 5) 武力擧棄라고 하는 所謂獨逸政策目標을 發表하기에 이른 것이다. 29) 그리고 1969年 10月 28日에는 1) 두개의 國家가 獨逸에 存在하는 事實을 認定하며 2) 四強의 權利와 義務를 繼續尊重하고 3) 核武器擴散禁止條約을 署名할 것이라는 西獨社民黨政府의 立場을 闡明하였다.

其後 부란트社民黨은 1970年初에 애곤·바- 內閣相을 모스크바에 派遣하여 蘇聯政府와 東獨을 包含한 東歐問題를 一括妥結하였다. 1970年 8月에는 獨逸問題에 對한 責任을 지고 있는 四強代表에 政府 覺書를 傳達하고 西獨이 締結할 東歐條約과 東西獨合意事項은 四強의 責任과 義務에 抵触되지 않는다는 經由를 밝혔다. 이에 對한 四強의 反應은 긍정적이었다. 四強中 如何한 國家도 反對하지 아니하였다. 30) 其間 國際潮流는 歐羅巴의 現狀固着에 依한 實利的 平和共存策으로 轉換되어 있었다. 부란트의 東歐政策은 이러한 點에서 解決展望이 없는 諸問題點을 未決問題로 文書하기로 合意한 後 現狀을 固着시킨 時代的 要請에 對應한 產物이라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부란트의 東歐政策結果는 (1) 歐羅巴諸國의 現存 國境線의 認定과 東獨承認 (2) 經濟 科學 技術 文化 等 其他 諸分野에서의 協力 (3) 東西交流의 橋梁設置 (4) 東西獨同時유엔 加入이라고 大體的으로 評價할 수 있을 것이다. 西獨은 이와같이 對東歐關係를 調整하고 유엔을 통한 世界舞台에로 가는 基礎를 精 築하였고 蘇聯은 對亞細亞 進出을 爲하여 유럽 安保協力會를 통한 對西歐羅巴安全策을 試圖할 수 있는 出發點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6. 独逸法統性 및 統一性에 對한

東西獨立場과 東西獨基本條約

戰爭結果를 國際法上 規定하고 解決策을 講究하는 節次는 講和條約이다. 獨逸의 境遇에 是 二次大戰終了後 全體로서의 獨逸

과 戰贖國間에 講和條約이 締結되지 못하였든 關係로 獨逸全體에 對한 責任은 1945年 8月의 포스담決議에 따라 四強이 지고있다.

이러한 緣由에서 獨逸의 法統性과 統一性問題도 東西獨이 各各 自身의 立場에 따라 相異한 見解를 主張하고 있다.

西獨側主張에 따르면 獨逸帝國은 1945年의 降服으로 完全히 消滅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存続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西獨이란 獨逸帝國의 一部가 國家的 側面에서 새로히 組織된 것이라고 看做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西獨이란 獨逸帝國과 全然 無關한 새로운 國家라고도 볼 수 없으며 獨逸帝國의 法的後繼者도 아닌 것이다.

即, 舊帝國의 一部가 새로히 組織되어 새로운 自身의 法的行爲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나 現在의 特殊事情으로 말미암아 獨逸全體에 對한 組織과 獨逸全體에 對한 政治的 行爲能力을 挾하고 있다는 것이다. 32) 이러한 不完全한 部分은 議會와 聯邦政府를 包含한 모든 西獨의 國家機關이 自身의 裁量에 따라 最善의 方法으로 研究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3)

東西獨基本條約은 이 論理에 따라 事實上 存在하는 두개의 國家 사이에 締結된 것이므로 國際法上的 條約이라고 볼 수 있으나 其

實은 하나의 獨逸이라고 하는 全體가운데에 內在하는 두개의 下部 組織사이에 締結된 것이므로 國內法的 契約과 같은 一面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東西獨間에는 會館을 交換하는 것이 아니라 代表部를 交換할 것이며 大使를 交換치 않고 全權代表를 交換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條約効力の 發生問題에 對해서도 같은 論理를 展開하고 있다. 聯邦大統領의 委任에 따른 批准文書를 交換한 것이 아니라 政府가 作成한 覺書를 交換한 것이며 東西獨間의 文易에 對해서 關稅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부란트首相은 1969年 10月28日字 政府聲明에서 基本法の 命하는 바에 따라 統一性を 維持強化하기 爲하여 東西獨間의 交流를 增進할 必要가 있다고 力說하였다.

東獨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獨逸帝國은 滅亡한 것이 아니라 存続하며 다만 戰勝聯合國이 포스담協定으로 獨逸이란 國家를 引受받은 關係로 國家權力이 占領國에 引繼되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34) 웃도 그레테볼은 1949年 3月19日 東獨人民議會에서 1948年 6月8日字 لندن決議에 따라 西方側에 獨逸을 不法적으로 分割하였기 때문에 1949年 10月7日에 制定된 東獨憲法이 西獨에도 有効하고 나아가서 國家法律的 法統性을 主張할 수 있다고 갈파하고 東獨과 獨逸帝國은 合致되는 同一體이며 國際法上的 同一한 主体라고 主張하였다. 35)

東獨의 이러한 主張은 1953년부터 漸次 獨逸內에 두개의 國家 이라고 하는 一民族二國家論으로 기울기 始作하였다. 이와같이 論

리를變更시킨 理由는 무엇일까? 西獨政府는 1950年 3月 22日 獨逸統一의 手段으로서 유엔監視下의 全獨逸自由選舉를 實施하자고 提唱하였다. 이와같은 西獨政府要望에 따라 西方側은 유엔事務總長에 對하여 獨逸內 自由選舉의 前提條件을 調査할 國際委員會 設置에 關한 專項을 議事日程에 넣을것을 要求한 結果 第6次 유엔總會는 유엔監視委員會를 自由選舉實施可能性 確認次 獨逸에 派遣키로 1951年 12月 20日에 決議하였으며 同決議에 따라 派獨되었든 委員會는 1952年 3月까지 西獨에서 任務를 마치고 東獨에 入境하려고 하였으나 蘇聯의 拒否로 挫折되고 말았다. 東獨을 分離하여 蘇聯安保를 爲한 防波堤로 삼고자한 術策에서 나온 것이다. 36)

1953年 9月 17日 울부리히트는 第16次 東獨共産黨 黨大會에서 獨逸에는 두개의 國家가 存在한다고 主張하였고 其後 오토 그레테볼도 類似한 發言을 하였다. 37) 從前에 主張하던 東獨이 獨逸帝國을 繼承하였다는 論理를 번복한 것이다. 即, 獨逸帝國은 1945年 5月 나치獨逸의 滅亡으로 消滅되었고 國家權力은 聯合國에 一但, 引受되었다가 其後 獨逸領土에 두개의 國際法的 個別國家가 새로히 樹立되었다고 主張하였다. 38) 東獨은 1968年 4月 6日에는 新憲法을 制定하여 第8條에서 「民主主義와 社會主義의 基盤下에서 統一을 成就하기 爲하여 二個의 獨逸國家는 努力한다」라고 規定함으로써 同等한 二個獨逸國家의 存在를 法的으로 明確히 設定하였다.

同憲法前文에는 「全獨逸民族에게 平和로운 社會主義로 가는 길을 提示하여야 한다는 責任感에서 東獨國民은 本社會主義憲法을 制定하

였다」고 記述되어 있다. 卽, 東西獨이 하나의 民族이란 것이다. 이러한 過程을 밟아서 東獨은 「一民族二國家論」을 確立한 것이다.

一民族二國家論은 同憲法 第1條規定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바 同規定은 東獨을 獨逸民族의 社會主義國家라고 定義하고 있다.

1968年의 東獨憲法은 또한 獨逸統一性問題에도 言及하고 있다. 同憲法 第8條 2項은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東西獨이 相互間의 關係를 正常化하여 相互間에 協力하여야 한다고 言及하고 나아가서 東獨과 東獨國民은 獨逸帝國主義(西獨)에 依하여 強要된 獨逸分斷을 克服하고 漸次的으로 二個의 獨逸國家가 社會主義 原則에 따라 接近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고하여 獨逸 統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1970年代에 이르러 東獨은 二民族二國家論을 發展시키고 있다. 東獨의 位置가 確保된 것이다. 東獨의 國境線은 不可侵的이라고 認定받게 되었다. 울브리히트는 1970年 12月17日 東獨共產黨 第25週年을 맞이하여 푸르베타리아階級이 政權을 占領하고 이제는 하나의 國民國家로 發展되고 있다고 主張하였으며 이 國民國家는 하나의 社會主義國家로서 부르조아와 勞動階級間의 矛盾에 依하여 國家問題가 決定되는 西獨과는 全然 相異할 뿐아니라 西獨보다 훨씬 優越한 國家라고 하여 東獨이 西獨을 앞서고 있다는 것이다.³⁹⁾

統一論理가 舞台後面으로 물러나고 階級을 앞세우게 된 것이다.

獨逸聯盟을 構成하자는 主張을 東西獨은 全然 相異한 存在라는 論理로 自己立場에 따라 飛躍시킨 것이다. 東獨社會主義統一黨(共

産党)書記長 호엑카도 이와같은 理論을 展開하고 있다. 그는 1972年 11月 뉴욕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獨逸統一問題에 대하여 이 問題는 問題로서의 價値가 없다고 一蹴하여 버렸다. 東獨은 東獨대로 社會主義共同체에 統合되어 버렸고 西獨은 西獨대로 西方防衛体制에 編入되어 있어 歷史는 이미 決斷을 내려 버렸다는 것이다. 東西獨을 分離시켜 歐羅巴現狀固着이란 共產側政策이 結實되었다는 意味이다.

東獨의 이 見解는 明白한 國際法違反이다. 全体獨逸問題는 戰勝四強의 責任問題에 屬한 것이다. 其外에도 東西獨이 歷史的으로 보아서 韓民族 韓國家였다고 하는 事實은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東獨은 歷史를 歪曲하고 否認하고 있는 것이다.



7. 맺는 말

끝으로 歐羅巴에서는 어떠한 条件下에 平和定着이 可能하였으며 韓半島는 어떠한 狀況에 있는가 簡單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歐羅巴에는 北大西洋防衛機構와 발샤바條約機構間에 勢力均衡이 確保되어 있었다. 따라서 紛爭이 發生할 境遇 核戰爭의 可能性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軍事的으로 衝突할 念慮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韓半島의 境遇는 特히 軍事的 勢力均衡이 歐羅巴의 境遇와 같이 完全하지 못하다. 北傀는 中蘇와 各各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나 韓國은 美國하고만이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며 日本은 日本自體의 防衛도 美國에 依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또한 韓半島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美國의 自動 介入이 條約上 保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美·蘇·中·日의 四強關係가 相互間에 얽혀 있어 相互 紛爭抑制作用을 한다고는 하나 歐羅巴의 境遇처럼 堅固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不充分한 部分을 補充하기 以前에 越南의 境遇처럼 形式上的 合意事項만을 남겨두고 性急한 緊張緩和政策을 追求하는 것은 많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西獨은 東獨과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莫強한 經濟的 實力을 所有하고 있었으며 軍事的 潛在力을 保有하고 있었으므로 西獨이 核武裝을 할 境遇 東歐圈內에서 여기에 対応할만한 나라가 없었고 蘇聯의 安保에도 적지아니한 威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미코가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에서 蘇聯이 西獨과 武力抱棄條約을 맺으므로서 西獨으로부터의 威脅을 除去할 수 있었다고 한 그의 意見を 彼歷하였든 事實은 이와같은 狀況을 雄弁한 것이라고 解釋하여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西獨은 獨自體的으로 西歐羅巴와의 統合을 推進하면서 東歐共產圈과 自體의 힘으로 緊張解消를 追求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韓國의 境遇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韓國은 美·日과의 유대를 強化하고 西方自由陣營이 廣大한 影響力을 利用하여 第三世界 및 非敵性共產諸國과의 關係改善을 積極推進하여 韓國이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國內的으로는 自主國防力을 強化하고 安保態勢를 견고히 굳혀야 할 것이다.

세계로 東西獨接近過程에서 參考할 點은 우선 非政治的 分野에서부터 相互交流가 發端하여 理解가 增進된 後에 政治的인 分野로 점진적으로 發展하였다고 하는 事實이다. 뿐만 아니라 西獨이 東獨을 아직도 國際法上 承認하지 않고 東獨의 地位變化에 細心한 注意를 기우려 對東獨關係를 內獨關係로 規定하고 있다는 事實에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7. 맺는 말

끝으로 歐羅巴에서는 어떠한 条件下에 平和定着이 可能하였으며 韓半島는 어떠한 狀況에 있는가 簡單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歐羅巴에는 北大西洋防衛機構와 발샤바條約機構間에 勢力均衡이 確保되어 있었다. 따라서 紛爭이 發生할 境遇 核戰爭의 可能性만이 남아 있었으므로 軍事的으로 衝突할 念慮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韓半島의 境遇는 特히 軍事的 勢力均衡이 歐羅巴의 境遇와 같이 完全하지 못하다. 北塊는 中蘇와 各各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나 韓國은 美國하고만이 防衛條約이 締結되어 있으며 日本은 日本自體의 防衛도 美國에 依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또한 韓半島에 紛爭이 發生한 境遇 美國의 自動 介入이 條約上 保障되어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美·蘇·中·日의 四強關係가 相互間에 얽혀 있어 相互 紛爭抑制作用을 한다고는 하나 歐羅巴의 境遇처럼 堅固하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不充分한 部分을 補充하기 以前에 越南의 境遇처럼 形式上的 合意事項만을 남겨두고 性急한 緊張緩和政策을 追求하는 것은 많은 危險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로 西獨은 東獨과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莫強한 經濟的 實力을 所有하고 있었으며 軍事的 潛在力을 保有하고 있었으므로 西獨이 核武裝을 할 境遇 東歐圈內에서 여기에 対応할만한 나라가 없었고 蘇聯의 安保에도 적지아니한 威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로미코가 소비에트聯邦最高會議에서 蘇聯이 西獨과 武力抱棄條約을 맺
으므로서 西獨으로부터의 威脅을 除去할 수 있었다고 한 그의 意見을
彼歷하였든 事實은 이와같은 狀況을 雄弁한 것이라고 解釋하여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西獨은 獨自體的으로 西歐羅巴와의 統合을 推進하면서
東歐共產圈과 自體의 힘으로 緊張解消을 追求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러나 韓國의 境遇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韓國은 美·日과의 유대
를 強化하고 西方自由陣營이 廣大한 影響力을 利用하여 第三世界 및
非敵性共產諸國과의 關係改善을 積極推進하여 韓國이 國際的 地位를 向
上시키고 國內으로는 自主國防力을 強化하고 安保態勢를 健全히 굳혀
야 할 것이다.

세째로 東西獨接近過程에서 參考할 點은 우선 非政治的 分野에서부터
相互交流가 發端하여 理解가 增進된 後에 政治的인 分野로 점진적으로
發展하였다고 하는 事實이다. 뿐만 아니라 西獨이 東獨을 아직도 國
際法上 承認하지 않고 東獨의 地位變化에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 對東
獨關係를 內獨關係로 規定하고 있다는 事實에도 留意하여야 할 것이다.

에어폴트会谈東獨側提案

1. 國際法의 原則에 立脚한 平等關係를 樹立하며 西獨은 單獨 代表權을 破棄한다.
2. 各各 相對方의 外交政策에 干涉치 아니한다.
3. 유엔憲章 24條에 따라 各各 相對方을 國際法上의 主体로서 認定하고 領土保全의 原則을 遵守하며 相對方國境線의 不可侵性을 尊重한다.
4. 同時에 유엔에 加入한다.
5. 核武裝을 拋棄하며 各自 軍事費를 半減한다.
6. 二次大戰으로 因하여 發生한 諸般 殘留問題를 討議한다.
7. 西獨의 對東獨負債清算問題와 賠償問題를 調整한다.

에어폴트会谈西独側提案

1. 独逸의 統一을 抛棄하지 않으며 東西独은 相互間 外國이 될 수 없다.
2. 모든 國際法上의 原則을 遵守하고 모든 差別待遇를 排除하며 領土保存을 尊重하고 모든 紛爭은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各自 相對方의 境界線을 尊重한다.
3. 各自 相對方의 社会体制에 干涉하지 않는다.
4. 相互間 善隣的 協力を 增進하며 技術協助를 爲한 政府間 會議에 다른 方案을 講究한다.
5. 独逸과 伯林에 關한 四強의 權利와 義務는 從前과 다름없이 遵守한다.
6. 伯林의 地位改善에 關한 四強의 努力을 支持한다.

카셀會談西獨側 20 個討議案件

1. 東西獨은 各自憲法에 統一을 志向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統一志向을 政策目的으로 設定하고 있는 雙方은 獨逸民族의 平和와 團結을 爲하여 東西獨關係를 調整하고 모든 不利한 條件을 除去하여 東西獨國民의 接觸條件을 改善하는 條約을 締結할 것에 合意한다.
2. 前記條約은 立法機構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雙方은 各自 人權尊重, 互惠平等과 平和 共存 및 相互無差別等 諸原則에 立脚한 關係를 國家之間(Zwischenstaatlich)의 一般原則으로 受諾할 意思를 表明한다.
4.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拋棄하며 相互間의 諸問題를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相對方의 領土保全을 爲하여 各自의 境界線을 尊重한다.
5. 相互間에 各自의 獨立性과 主体性을 尊重하여 相對方 內政에 干涉하지 않는다.
6. 雙方은 各自 相對方을 代表할 수 없다.
7. 締結當事者는 如何한 戰爭도 獨逸領土에서 發生하여서는 안된다 고 하는 事實을 엄숙히 宣言한다.

8. 雙方은 온 人類의 平和共存을 威脅하는 一切의 行動을 中止할 義務를 진다.
9. 雙方은 歐羅巴 安全保障에 도움이 되는 軍備縮少와 軍備制限을 爲한 努力을 支持한다.
10. 雙方이 將次 締結할 條約은 二次大戰의 結果로 나타난 獨逸의 一民族 二國家라고 하는 特令事情을 前提條件으로 考慮하여야 한다.
11. 포스담宣言에 規定된 全體로서의 獨逸과 伯林에 對한 四強의 權利와 義務는 存続한다.
12. 獨逸과 伯林에 對한 四強合意事項은 尊重한다. 西獨과 西伯林 사이의 連関關係도 이를 尊重한다. 雙方은 西伯林內外狀況의 正常化를 爲한 四強의 努力을 支援한다.
13. 雙方은 兩國立法府사이에 어떠한 分野가 衝突의 要因이 될수 있는 點을 檢討하여 兩國國民에게 不利한 要件을 除去하기 爲하여 努力한다. 但, 兩國主權은 各自 自己領土에 局限한다.
14. 將次 雙方이 締結할 條約은 雙方內의 旅行條件을 改善하고 移轉의 自由를 保障하는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15. 家族分斷을 解決하는 對策을 講究한다.

16. 接境地域에서 發生하는 問題는 善隣精神에 立脚하여 解決한다.
17. 雙方은 交通 通信과 情報交換, 科学과 教育 文化와 体育 및 環境淨化等 諸分野에서 相互協力하여 이를 具體化시키기 爲하여 서로간에 討議한다.
18. 內獨交易에 關해서는 現存協定과 合意事項을 遵守하며 交易關係는 繼續 擴張한다.
19. 雙方政府는 閣僚級 全權代表를 任命하며 同全權代表의 代理者가 勤務하는 事務處를 設置한다. 全權代表와 그의 代理者의 管掌事務는 具體적으로 規定한다.
全權代表와 그의 代理者가 相對方政府所在地에서 活動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고 또한 모든 便宜를 提供하며 이를 保障한다.
20. 雙方은 將次 締結할 條約에 根拠하여 雙方이 모든 國際機構에 加入하고 活動할 수 있는 前提事項을 調整한다.

바 - 文 書 (Bahr-papier)
(西独과 蘇聯間의 東歐問題에
對한 合意文書)

1.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은 國際平和의 維持 및 緊張解消를 第1次的 政策目標로 看做한다. 雙方은 歐羅巴現象을 基準原則으로 定立하고 그 原則 밑에서 歐羅巴諸國間의 平和를 圖謀하기 爲하여 歐羅巴에서의 諸般關係 正常化를 增進하도록 努力한다.
2.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은 相互關係에 있어서 그리고 歐羅巴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유엔 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따라서 雙方은 모든 紛爭을 全적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고 歐羅巴安全問題에 있어서 그리고 雙方相互關係에 있어서 유엔→憲章 第2條에 따라 武力에 依한 威脅과 武力의 使用을 삼가할 義務를 진다.
3. 蘇聯과 獨逸聯邦共和國은 歐羅巴에 있어서의 平和가 現存國境線이 維持되어야만 保存될 수 있다는 데에 合意한다. 雙方은 歐羅巴諸國의 現存國境線에 依한 領土保存을 全적으로 尊重할 義務를 진다. 雙方은 如何한 國家에 對하여서도 何等의 領土的 要求를 갖고 있지아니하며 未來에 있어서도 領土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4.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国間의 協定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한 雙務的 또는 多邊的 諸條的과 協定에 抵触되지 않는다.
5. 独逸聯邦共和政府와 社会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国政府間에는 雙方이 將次 締結할 正式條約과 独逸聯邦共和国이 社会主義國家 特別히 独逸民主共和国, 폴란드人民共和國 및 捷克斯로바키아社会主義共和國과 締結할 條約이 對一的인 單一體라고 하는데에 諒解가 成立되어 있다.
6. 独逸聯邦共和国은 独逸民主共和國과 平等하고 그리고 拘束力이 있는 通常國際條約을 締結할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雙方이 締結할 이 條約은 雙方이 第三國과 一般的으로 締結하는 條約과 同一하여야 한다.

따라서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國은 全的으로 無差別하고 平等한 原則에 立脚하여 그리고 兩者의 國境안의 内部權限에 關한 各自의 獨立性和 主体性を 尊重하는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關係를 發展시킨다.

独逸聯邦共和国政府는 兩者中 어느 政府도 相對方을 外國에서 代表할 수 없으며 相對方の 名義로 行動할 수도 없다는 原則에 立脚하여 兩者의 對三國關係가 形成되어야 한다는 原則을 受諾한다.

7. 獨逸聯邦共和國政府와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政府는 歐羅巴緊張緩和 過程에서 歐羅巴諸國間의 特別히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의 關係를 改善하기 爲하여 各自의 立場에 따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이 유엔과 그傘下 特別機構에 加入하는데 必要한 措置를 取할 用意가 있음을 闡明한다.
8. 獨逸聯邦共和國政府와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政府間에 文憑條約을 無効化시키기 爲한 問題가 獨逸聯邦共和國과 捷코스로바키아 社會主義共和國 雙方이 容納할 수 있는 形態로 調節되어야 한다는데 諒解가 成立되어 있다.
9. 獨逸聯邦共和國政府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政府는 兩國의 利益을 爲하여 그리고 歐羅巴의 平和를 鞏固히 하기 爲하여 兩國間의 經濟, 技術, 文化, 其他 諸分野의 關係를 繼續 發展시킨다.
10. 獨逸聯邦共和國政府와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政府는 歐羅巴의 安全과 協力を 鞏固히 하는 問題에 對한 會談計劃을 歡迎하며 同計劃을 準備하고 成功裡에 實踐하기 爲하여 各自 尽力한다.

- *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쓰비에트合衆共和間의 条約
(1970年8月12日)과 独逸統一性에 關한 独逸聯邦
政府 公翰

I.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쓰비에트合衆共和間의 条約
(1970年 8月 12日)

兩締結當事者는

歐羅巴와 온 世界의 平和와 安全을 鞏固히 하기 爲하여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國家之間의 平和的 協力이

모든 民族의 切實한 要望과 國際平和의 一般的 利益에 一致된
다는 信念을 갖고

雙方이 以前에 合意한 措置 特히 雙方이 1955年 9月13日에
樹立한 外交關係가 雙方相互間의 關係를 繼續 發展시키고 鞏固
히 하는데 必要한 새로운 措置를 講究하는데 有利한 條件을
이루고 있다는 事實을 높이 評價하여

雙方의 利益을 爲하여 經濟, 科學, 技術, 文化等 諸分野에 있어
서 雙方의 協力を 改善強化하기 爲한 各自의 決心을 條約形態
로 表現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 1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소비에 트合衆共和国은 國際平和의 維持와 緊張緩和의 達成을 各自 自身の 重要政策 目的으로 看做 한다.

雙方은 歐羅巴의 現狀을 그러한 努力을 為한 基調로 삼는다.

第 2 条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소비에 트合衆共和国은 雙方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나 歐羅巴의 安全과 國際間的 安全을 保障하는 問題에 있어서도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따라서 雙方은 모든 紛爭을 全적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歐羅巴의 安全과 國際間的 安全에 關係되는 問題에 있어서 또는 유엔 憲章 第 2 条에 依한 相互間的 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할 義務를 진다.

第 3 条 上述한 目的과 原則에 따라 独逸聯邦共和国과 社会主義 소비에 트合衆共和国은 歐羅巴에 있어서의 平和가 全적으로 現存 國境線 如何한 者에 依해서도 侵官되지 않을 境遇에만 保存될 수 있다는데에 合意한다.

雙方은 歐羅巴諸國의 現存 國境線에 따른 領土的 保存을 全적으로 遵守할 義務를 진다.

雙方은 如何한 領土的 要求도 갖고 있지 않으며 未來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 要求를 提起하지 않을 것을 宣言한다.

雙方은 本條約의 署名日을 基準으로 하여 現在나 未來에 있어서
도 폴란드人民共和國의 西部國境線을 構成하고 있는 오더-나이세
線과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의 境界線을 包含한 모든
歐羅巴諸國의 國境線이 不可侵의인 것이라고 看做한다.

第 4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間의 本條約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한 雙務的 또는 多邊的 條約이나 合意事項에
抵触되지 않는다.

第 5 條 本條約은 批准을 必要로하며 批准文書를 本에서 交換하는
날에 効力을 發生한다.

本條約은 獨逸語와 露語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1970年 8月
12日에 모스크바에서 締結되었다. 獨逸語와 露語原文은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獨逸聯邦共和國

社會主義 소비에트合衆共和國

全權代表

全權代表

비터·부란트

A·코시킨

발터·셀

A·그로미코

II. 獨逸統一性에 關한 獨逸聯邦共和國政府公翰
(1970 年 8 月 12 日)

聯邦政府는 蘇聯外務省에서의 條約署名에 즈음하여 下記公翰을 手
交하였다.

尊敬하는 長官!

獨逸聯邦共和國과 社會主義 소비에트 合衆共和國間의 條約署名과 關
聯하여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本條約이 獨逸民族의 自決權에 依한
獨逸民族의 統一이 이룩될 수 있는 歐羅巴平和를 爲하여 努力할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目的에 違背되지 않는다는 事實을 確認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발터·셀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간의
相互關係 正常化條約 (1970年12月7日)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歐羅巴諸民族에게 極甚한 苦難을 招來하고 폴란드를 第1次로
犧牲시킨 世界第2次大戰이 終了된지 25年이 經過하였다는 事實을
考慮하여

其他 兩國에는 平和로운 將來를 保障받아야 할 新世界가 成長하
였다는 事實을 감안하여

兩國間에 正常的이고 善隣的인 關係가 發展할 수 있고 平和的인
共存이 이룩될 수 있는 永続的 根本原則을 講究하여야 할 要望에
서

歐羅巴에서 平和와 安全을 固着시킬 努力의 一環으로

現在國境線內에 있어서의 歐羅巴諸國 國境線의 不可侵性과 歐羅巴
諸國→領土保存과 歐羅巴諸國主權의 尊重이 平和를 위한 根本的意義
를 갖고 있다고하는 것을 認識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①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1945年 8月2日
字 포스담會議 決議文 第4章에 規定된 오더-나이세線이 폴란드

人民共和國의 西部國境線을 構成한다는 것을 異議없이 確認한다.

② 雙方은 經濟, 科學, 技術, 文化, 其他 諸分野에 있어서 雙方的 利益을 爲하여 雙方的 協力を 強化하는데 同意한다.

③ 雙方은 相互間에 如何한 領土的 要求도 갖고있지 않으며 未來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要求를 提起하지 않는다는 것을 宣言한다.

第 2 條 ①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雙方的 相互關係에 있어서나 歐羅巴 및 世界安全保障問題에 있어에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② 따라서 雙方은 유엔憲章 第 1 條와 第 2 條에 따라 雙方的 모든 紛爭을 全적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歐羅巴의 安全問題와 國際的 安全問題 그리고 雙方相互關係에 關한 問題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한다.

第 3 條 ① 獨逸聯邦共和國과 폴란드人民共和國은 本條約의 確固한 原則에 立脚하여 雙方的 相互關係를 完全히 正常化하고 包括적으로 發展시키기 爲하여 앞으로도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② 雙方은 經濟, 科學, 技術, 文化, 其他諸分野에 있어서 雙方的 利益을 爲하여 雙方的 協力を 強化하는데에 同意한다.

第 4 條 本條約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하였거나 雙方이 現在 關係하고 있는 雙務的 또는 多邊的 國際的 合意事項에 低觸되지 않는다.

第 5 条 本条約은 批准을 必要로 하며 本에서 批准文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을 發生한다.

本条約은 兩締結当事者의 全權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条約은 独逸語와 폴란드語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1970 年 12 月 7 日에 발샤바에서 締結되었다. 独逸語와 폴란드語 原文은 同一한 効力을 갖는다.

独逸聯邦共和国

全權代表

비리·브란트

발터·셀

폴란드人民共和国

全權代表

J. 치란키빅츠

St. 에드리 코브스키

獨逸聯邦共和國과 체코슬로바키아

社會主義共和國間的 條約 (1973)

獨逸聯邦共和國과

체코슬로바키아社會主義共和國은

歐羅巴 諸民族의 調和的 共存이 平和의 必要要件을 構成하고 있다
는 歷史的 認識에 立脚하여

歐羅巴 諸民族에게 極甚한 苦難을 招來하였던 世界第二次大戰과 關
聯하여 雙方相互關係에 있어서 不幸했던 過去를 直刻的으로 清算할
確固한 意志로서

1938年 9月 29日字 뮌헨協定은 나치政權이 武力으로 威脅하여
체코슬로바키아共和國에 強要한 協定이라고 하는 事實을 認定하고,

其間 兩國에는 平和로운 將來를 保障받을 權利를 갖고있는 新世
代가 成長하였다는 事實에 直面해서

善隣的 關係가 發展할 수 있는 永統的 根本原則을 講究코자하는
意圖에서

歐羅巴에서 平和와 安全을 固着시킬 努力의 一環으로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에 立脚한 平和的 協力이 모든 民族의 要
望과 世界平和要件에 符合한다는 信念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第1条 独逸聯邦共和國과 체코스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國은 本條約의 基準에 따라야 할 雙方相互關係에 있어서 1938年 9月29日의 文獻協定을 無効라고 看做한다.

第2条 ① 本條約은 1938年 9月30日부터 1945年 5月9日까지 에 適用되었든 法律에 依한 自然人 및 法人에 對한 法律効力에 는 抵触되지 않는다. 但, 兩締約當事者가 正義의 基本原則에 關한 意見差異로 말미암아 無効라고 看做하는 措置의 効力에 關한 事項은 여기서 除外한다.

② 本條約은 締結當事者 各自의 法律秩序에 依한 生存者 및 死 亡者의 國籍問題에 抵触하지 않는다.

③ 文獻協定에 對한 聲明과 關聯하여 本條約을 체코스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國이나 或은 체코의 自然人 및 法人이 物的(賠償) 要求를 提起할 수 있는 法的要件을 提供한다고 看做하여서는 안 된다.

第3条 ① 独逸聯邦共和國과 체코스로바키아 社会主義共和國은 雙方相 互關係에 있어서나 歐羅巴 및 世界安全保障問題에 있어서 유엔憲 章의 目的과 原則을 遵守한다.

② 따라서 雙方은 유엔憲章 第1条와 第2条에 따라 雙方의 모든 紛爭을 全적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歐羅巴安全問題와 國際安全問題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 한다.

第 4 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스로바기아社会主义共和国은 上述한
目的과 原則에 따라 雙方이 接하고 있는 国境線의 不可侵性을
現在나 未來에 있어서 認定하고 雙方의 領土保存을 相互間에 全
的으로 尊重할 義務를 진다.

② 雙方은 相互間에 如何한 領土的要求도 갖고있지 않으며 未來
에 있어서도 如何한 領土的要求를 提起하지 않을것을 宣言한다.

第 5 条 ① 独逸聯邦共和国과 체코스로바기아社会主义共和国은 雙方相
互間의 關係가 包括的으로 發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必要한
措置를 取한다.

② 雙方은 經濟, 科学, 技術, 文化 環境淨化 体育 交通 其他諸分
野에 있어서 雙方의 利益을 爲하여 雙方의 協力을 強化하는데에
同意한다.

第 6 条 本條約은 批准을 必要로하며 本에서 批准文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を 發生한다.

本條約은 兩締約当事者の 全權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條約은 独逸語와 체코語로 各各 二通의 原文으로 푸라그에서
締結되었다. 独逸語와 체코語 原文은 同一한 効力を 갖는다.

独逸聯邦共和国
全權代表

체코스로바기아社会主义共和国
全權代表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 (東西獨基本條約)
의 基本原則에 關한 條約 (1972年12月21日)과
獨逸聯邦共和國이 獨逸民主共和國에 手交한 獨逸統一
性에 關한 公翰 (1972年12月21日)

兩締約當事者

平和保存에 對한 雙方의 責任을 認定하고

歐羅巴에 있어서 安全保障과 緊張緩和를 爲하여 貢獻할 努力의
一環으로

現在 國境線內에 있어서의 歐羅巴諸國 國境線의 不可侵性과 歐羅
巴諸國 領土保存과 歐羅巴諸國主權의 尊重이 平和를 爲한 根本的
條件이라고 하는 事實을 意識하여

兩國이 雙方相互間의 關係에 있어서 武力에 依한 威脅이나 武力
의 使用을 삼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可決的與件을 尊重하고 國家的次元의 問題 (Nationale Frage)를
包含한 根本的 諸問題에 對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間에 存在하는 意見差異에 不拘하고

兩獨國에 存在하는 人間의 福祉를 爲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

民主共和國間의 協力を 爲한 前提條件을 創造할 要望에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平等原則에 立脚하여 正
常的이고 善隣的인 相互關係를 發展시킨다.

第2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의 目的과 原則
을 遵守하는 特히 모든 主權國家의 平等과 獨立 및 主体性和
領土의 保存 그리고 自決權과 人權 및 無差別原則을 尊重한다.

第3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유엔憲章에 따라 雙方의
紛爭을 全的으로 平和的 方法으로 解決하며 武力에 依한 威脅이
나 武力의 使用을 삼가한다.

雙方은 現在나 未來에 있어서 雙方의 現在 境界線의 不可侵性을
確認하고 領土의 保存을 全的으로 尊重한다.

第4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間 어느 一方도 相
對方을 國際的으로 代表할 수 없으며 相對方의 名義로 行動할
수 없다.

第5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歐羅巴諸國間의 平和關係
를 增進하고 歐羅巴의 安全과 平和를 爲하여 貢獻한다. 雙方은
歐羅巴에 있어서 軍備縮少와 軍備制限을 爲한 努力을 關係國의
安保에 不利하지 않은 範圍內에서 支援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效果的 國際監視下의 一般의 이고 完全한 軍備縮少란 目的을 가지고 核武器와 其他 大量 虎殺 武器의 分野에 있어서 國際安全에 도움이 되는 軍備制限과 軍備 縮少를 為한 努力은 支援한다.

第 6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各自 自身の 主權이 自身の 領土에만 局限된다는 原則을 受諾한다. 雙方은 內政과 外政에 있어서 各自의 獨立과 主体性을 尊重한다.

第 7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의 關係를 正常化함에 있어서 實際的이고 人間的인 問題를 調整한다. 雙方은 本條約의 原則에 立脚하여 그리고 雙方相互間의 利益을 為하여 經濟 科學, 技術, 交通, 法律, 通信, 保健, 文化, 體育, 環境淨化, 其他 諸 分野에 있어서 相互協力을 發展시키고 增進시킬 用意가 있음을 宣言한다. 具體的事項을 附屬議定書에서 調整한다.

第 8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常住代表部를 守護한다. 常住代表部는 相對方 政府所在地에 設置한다. 同常住代表部 設置에 關係되는 現實的問題는 追加的으로 調整한다.

第 9 條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이 以前에 締結하였거나 雙方이 現在 關係하고 있는 一切의 雙務的 또는 多邊的 條約이나 合意事項에 本條約이 抵触되지 않는다는 데에 合意한다.

第 10 条 本条約은 批准을 必要로 하며 該当覚書가 交換되는 날에 効力을 發生한다.

本条約은 締結当事者의 全權代表에 依하여 署名되었다.

本条約은 二通의 独逸語 原文으로 伯林에서 1972年 12月 21日 에 締結되었다.

独逸聯邦共和国

独逸民主共和国

全權代表

全權代表

애곤·비—

미카엘·콜 博士

獨逸統一性에 關하여 獨逸聯邦共和國政府가
獨逸民主共和國政府에 手交한 公翰
(1972年12月21日)

尊敬하는 長官!

今日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間에 基本條約을 署名함에
있어서 獨逸聯邦共和國政府는 本條約이 獨逸民族의 自決權에 依한
獨逸民族의 統一이 이룩될 수 있는 歐羅巴平和를 爲하여 努力할
獨逸聯邦共和國의 政治目的에 違背되지 않은다는 事實을 確認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年 12月 21日

애곤 · 바—

獨逸民主共和國

長官 米카엘 · 콜博士 貴下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基本條約에 對한 附屬議定書

<第 3 條에 關하여>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政府의 全權代表로 構成되는 하나의 委員會를 樹立하는데 合意한다. 同委員會는 兩國間의 現在國境線을 再檢討하여 必要한 境遇 更新 補完하고 國境線에 對한 必要한 文書를 作成한다. 同委員會는 其外에도 兩國國境과 關聯된 問題 卽, 河川管理 에너지供給 및 損害賠償問題를 調整하는데 貢獻한다. 同委員會는 基本條約 署名後 作業에 着手한다.

<第 7 條에 關하여>

- ①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간의 交易은 現存 協定에 따라 繼續한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兩國間經濟關係를 增進하고 不適切한 規定을 更新하고 交易構造를 改善하기 爲하여 長期合意事項을 締結한다.

- ②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雙方의 利益을 爲하여 科學 및 技術分野의 協力을 促進시키고 必要한 條約을 締結한다.

- ③ 1972年 條約을 根拠로 이룩된 交通分野의 協力は 이를 繼續 擴張하고 發展시킨다.
- ④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을 爲하여 特히 民法과 刑法 分野에서 法律的協助를 必要로하는 者를 爲하여 可能한 限 合理的이고 簡單하게 法律分野에서의 法律交流에 關한 條約을 縮結한다.
- 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世界通信協會의 憲章과 國際電信電話條約에 立脚하여 通信協定과 電信電話協定을 縮結하는데 合意한다. 雙方은 前記 二個協定을 各各 世界通信協會와 國際電信電話聯盟에 通告한다. 東西獨協定 가운데는 雙方의 現存會議事項과 雙方에 有利한 手續節次도 包含시켜 規定한다.
- ⑥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保健分野에 相互協力한다. 雙方은 相當한 條約을 縮結하여 同條約 가운데 可能한 範圍內에서 醫藥品의 交換 및 特殊醫療所와 療養所에서의 治療에 關한 規定은 마련한다.
- ⑦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文化分野에 있어서의 協力を 增進시킨다. 이러한 目的을 爲하여 雙方은 政府間協定을 縮結하기 爲한 合法을 開議한다.

- ⑧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基本条約 署名後 体育分野에서의 相互關係를 促進시키기 爲한 雙方간의 會談을 支援할 用意가 있음을 確認한다.
- ⑨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雙方에 有害한 不利点과 危險을 除去하기 爲하여 環境淨化에 關한 合意事項을 마련한다.
- ⑩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相互間 및 雜誌의 受取關係 그리고 放送 및 電送(테레비)의 受信關係를 擴張하기 爲하여 雙方會談을 開催한다.
- ⑪ 独逸聯邦共和国과 独逸民主共和国은 兩國國民의 非商業分野에서의 代金支払과 代金清算을 調節하기 爲한 會談을 開催한다. 雙方은 雙方의 利益을 爲하여 社会政策的 見地에서 短期協定을 締結하도록 後援한다.

基本条約에 對한 議定書記錄

基本条約은 財産問題에 關해서는 雙方間의 法的地位에 對한 見解 差異로 因하여 如何한 規定도 마련하지 않는다.

国籍問題에 關한 獨逸聯邦共和國의 留保事項

獨逸聯邦共和國은 国籍問題가 基本条約에 依해서 調整되지 아니하 였음을 確認한다.

家族相逢과 施行條件 및 商品以外的 貨物輸送條件의 緩和에 關하여 交換된 公翰

尊敬하는 바 - 長官!

今日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間의 基本条約을 署名함에 즈음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榮光을 갖는 바 임니다.

獨逸民主共和國政府는 基本条約發効後 相互關係를 正常化함에 있어 서 下記分野의 諸問題를 調整하기 爲한 措置를 取할 것임니다.

① 家族離散問題의 解決

② 1972年 5月26日字 公翰과 關聯하여 觀光客을 包含한 東

西独越境旅行者와 訪問客을 爲한 諸條件의 改善措置

③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사이애 있어서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條件의 改善

㉞ 越境膳物箱子와 小包輸送條件의 改善

㉟ 越境旅行者와 訪問客 받은 小荷物携帶條件의 改善

㊱ 移舍用貨物과 相續받은 貨物에 關한 許可手續의 簡素化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 年 12 月 21 日

콜 博士 署名

独逸聯邦共和国

首相官署

애 곤 · 바 - 長官 貴下

尊敬하는 콜長官!

今日 貴下の 다음과 같은 公翰을 正式으로 接受하였음을 確認하는 榮光을 갖는 바입니다.

今日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의 基本条約을 署名함에 즈음하여 本人은 貴下에게 下記事項을 通告하는 榮光을 갖는 바 입니다.

独逸民主共和国政府는 基本条約發効後 相互關係를 正常化함에 있어 서 下記分野의 諸問題를 調整하기 爲한 措置를 取할 것입니다.

- ① 家族離散問題의 解決
- ② 1972年 5月26日字 公翰과 關聯하여 觀光客을 包含한 東西独越境旅行者은 訪問客을 爲한 諸條件의 改善措置
- ③ 独逸民主共和国과 独逸聯邦共和国사이 에 있어서 商品以外의 貨物輸送條件의 改善
 - ㉠ 越境膳物箱子와 小包輸送條件의 改善
 - ㉡ 越境旅行者와 訪問客小荷物 携帶條件의 改善
 - ㉢ 移舍用貨物과 相統받은 貨物에 對한 許可手續의 簡素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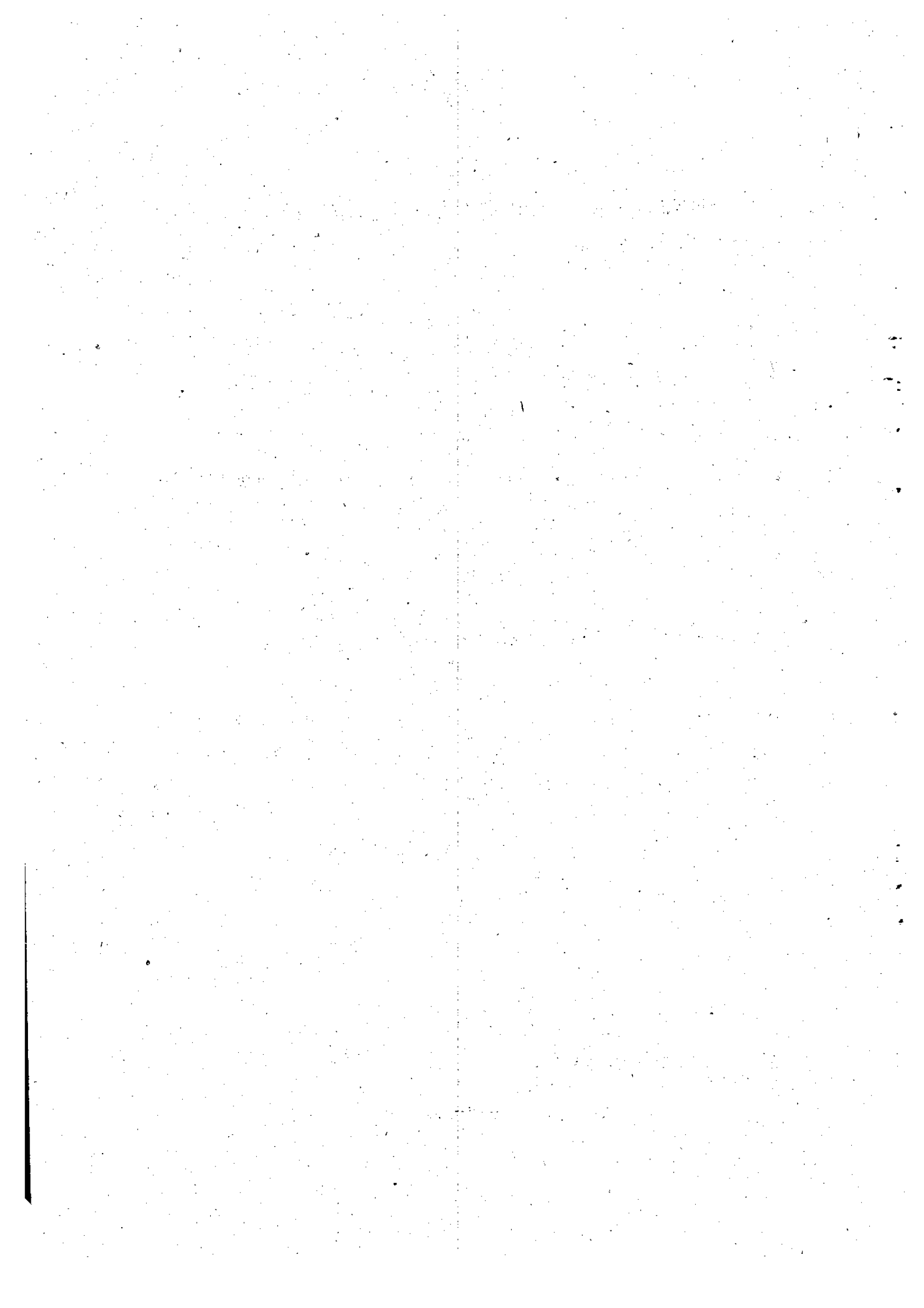
끝으로 本人 最高의 敬意를 表합니다.

1972年 12月 21日

바 一 署 名

独逸民主共和国

長官 미카엘-콜博士 貴下



参考文献

1. Friearich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3
2. Georg Schwarzenberger: Power Politics, London, Stevens & Sons Ltd. 1951
3. W. Friedman: An Introduction to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4.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Siegler & Co. K.G. Verlag, 1957
5. O.M. vonder Gablentz: Documents on the Status of Berlin, München, R. Olden burg Verlag, 1959
6.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7. Jürgen Domes; Marie-Luise Nâth: Die Aussenpolitik der Volksrepublik China,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2
8. Heinrich End: Zweimal deectsche Aussenpolitik, 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3
9. Thomas Weingartner: Die Aussenpolitik der Sowjetunion,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10.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in Europa, S. Fischer Verlag, Frankfurt am Main 1968.
11. Karl-Hermann Flach, Werner Maihofer, Walter Scheel: Die Freiburger Thesen der liberalen,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2.
12. Richard Löwenthal und Heinrich Vogel: Sowjetpolitik der 70 er Jahre,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1972.
13. Nobert Blüm: Reaktion oder Reform, Wohin geht die CDU?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2.
14. Emil Bandholz: Zwischen Godes berg und Grossindustrie oder Wo steht die SPD? Rowohlt Taschenbuch Verlag, Hamburg, 1971.
15. Harold Rasch: Politik mit dem Osten, Fischer Bücherei, Frankfurt am Main und Hamburg 1970.
16. Olzog/Herzig: Die politischen Parteien, SPD, FDP, CDU/CSU, München, Günter Olzog Verlag, 1973.
17. Friedrich B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Band, Allgemeines Friedensrecht, C.H. Beck-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18. Friedrich Berber: KRIEGSRECHT, C.H. Beck-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19. Birke Neumann, Die Sowjetisierung Ost-Mitteleuropas,
Alfred Metzner Verlag, Frankfurt/M., Berlin, 1959.
20. Ludwig Bergsträsser: Geschichte der politischen Parteien
in Deutschland Isar Verlag Gunter Olzog, München, 1955.
21. Dr. Friedrich Berber: Völkerrechtliche Verträge, dtv.,
München, 1973.
22. Dokumente zur Berlin-Frage 1944-1962. R. Oldenbourg
Verlag, München, 1962.
23.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73.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Hauptband
VI, Hauptband
24.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IV, VI, VII,
Siegler & Co., Verlag für Zeitarchiv, Bonn, 1972.
25.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Band 7, 8, 11,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Druck- und Verlagshaus,
Schneider & Weber, Kassel, 1971.
26.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4.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Elsnerdruck KG, Berlin.

- 註 1)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 97-98.
- 註 2) Georg Schwarzenberger: Power Politics, Stevens & Sons Ltd., 1951, pp. 387-392; W. Friedmann: An Introduction to World Politics, London, Macmillan & Co., Ltd., 1957 pp. 189-198;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 98.
- 註 3) Olzog Herzig: Die Politischen Parteien, München, Günter Olzog Verlag, 1973, p. 151.
- 註 4)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The Ollenhauer Plan, Siegler & Co. K.G. Verlag, Bonn 1957, pp. 121-122.
- 註 5) Olzog Herzig: Die Politischen Parteien, München, Gunter Olzog Verlag, 1973, pp. 65-71.
- 註 6)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Verlag fur Zeitarchiv, 1957 pp. 116-118, pp. 121-122.
- 註 7) 当時西独首相 Korad Adenauer 및 仏蘭西外相 Robert Schuman 과 伊太利首相 Alcide de Gasperi 等 歐羅巴統合運動者는 大部分 旧教出身이었음.

註 8)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1973. pp.52-56

註 9) Ibid. pp59-60

註 10) Wolfram F. Hanrieder: Die stalu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144

註 11) 1955年 東西獨이 다같이 모스크바에 大使館을 設置하게 되자
西獨의 地位가 弱化되는 것을 豫方하기 爲하여 곧 할슈타인
原則을 西獨議會에서 通過시켜 公布하였다.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Köln 1973 pp 21-22

註 12) 1969年現在 基準東西獨 比較

	西 獨	東 獨	
面 積	248,571 平方키로	108,174 平方키로	100:44
人 口	64,800,000	17,000,000	100:28
國民生産高	5,730 億마크	1,380 億마크	100:24

註 13) Tatsachen über Deutschland Bonn, Presse-und Informa-
tionsamt der Bundesregierung, 1972. p61

註 14) Friedrich L. Schuma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 1953. p.412

註 15) 蘇聯外相 모로토프는 東西獨에서 外軍을 撤収하고 東西獨을 中立化시키자고 提案하였으며 그 方法으로 東西獨議회의 代表로 構成되는 全獨理事會를 設立하자고 提議하였다.

Heinrich Siegler: The Reunification and security of Germany, Bonn, Verviag fur Zeitarchiv, 1957
pp.83-90, pp.160-161

註 16) Ibid., pp.148-150

註 17)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104

註 18) O.M. von der Gablentz: Documents on the status of Berlin, München, R. Oldenburg Verlag, 1959, pp.132-234

註 19) Dokumente zur Berlin-Frage, 2. Auflage München, R. Oldenburg Verlag 1962, pp.468-470

註 20) Heinrich End: Zweimal deutsche Aussenpolitik. Verlag Wissenschaft and Politik, Köln 1973 p.50

註 21) Der Spiegel, 19/1965, p.27

註 22)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112

註 23) Harold Rasch: Politik mit dem Osten Frankfurt am Main, Fischer Bücherei, 1970, p.96 Der Spiegel 13/1967, pp.42-53; Sommer, Bonn changes course, p.483

- 註 24) Europa-Archiv M/1966, pp.171-175;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
frage. Hauptband IV, Bonn, Siegler & Co., 1970,
pp.124-130
- 註 25)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u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121-122
- 註 26)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IV, Bonn, Siegler & Co., 1970,
pp.210-218
- 註 27) Ibid., pp.412-414
- 註 28) John H. Herz: The Formation of grand coalition, in
James B. Christoph and Bernard E. Brown, eds
cases in Comparative politics, Boston 1968
- 註 29)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66, 12,13
- 註 30)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IV, Bonn, Verlag für Zeitarchiv, 1970
p.480
- 註 31) Wolfram F. Hanrieder: Die stabile Krise,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1, pp.121-122

- 註32) Thomas Weingartner: Die Aussenpolitik der Sowjetunion,
Düsseldorf, Bertelsmann Universitätsverlag 1973,
pp.48-49; Richard Löwenthal und Heinrich Vogel:
Sowjetpolitik der 70er Jahre, Stuttgart, Verlag
W. Kohlhammer, 1972, pp.30-32
- 註33) Ibid., pp.41-54
- 註34) U.S. News & World Report 1969, 12, 29 pp.29-30
- 註35)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Bonn, 1970, 8,17
- 註36) Bulletin, Presse-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
gierung, Bonn, 1971, 2, 26;
Ibid., 1971, 4,7;
Ibid., 1971, 7,6,
- 註37) Friedrich Berh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Band, Allgemeines Friedensrecht, C.H. Beck-
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p.243
- 註38) 1973年 7月 31日字 西独聯邦憲法裁判所의 東西独基本条約法
에 对한 判決文 参照
- 註39) 西独基本法 第16条, 第23条 및 第146条 参照
- 註40) DRZ J9 1946, p.131 및 Morgen, 1946, 5.25
- 註41) Informationsdienst des deutschen Volksrates H.I. p.6

- 註42)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fred A. Knopf, 1961. p.446
- 註43) Neues Deutschland, 1953, 9, 19;
Dokumente zur Aussenpolitik der Regierung der DDR,
Bd. II, Berlin 1955, p.75
- 註44) Friedrich Herber: Lehrbuch des Völkerrechts,
1. Band, Allgemeines Friedensrecht, C.H. Beck-
Verlag, München und Berlin, 1960, p.242
- 註45) Neues Deutschland, 1971, 1, 14
- 註46) I bid., 1972, 1, 6;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Siegler & Co., Verlag für Zeitarchiv, Bonn,
1972, pp.361-362
- 註47) Heinrich Siegler: Dokumentation zur Deutschlandfrage,
Hauptband VII, Bonn, Siegler & Co., 1970
pp.551-554

